

풍수재위험 및 관련보험 대책

주 수 호

〈인천지부 업무과장〉

1. 머리말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을 전후하여 풍수재 위험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다.

풍수재해 위험으로서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이들 중 거의 대부분 태풍 및 호우에 의한 피해로서 계절별로는 6·7·8·9월인 여름철을 전후하여 집중되고 있다.

2. 위험 대비책(보험)

특히,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상이변 현상이 극심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 풍재나 수재의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책으로는 물론 1차적으로 풍수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토목공사 등과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2차적으로는 보험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보험이야말로 위험 대비책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수재 사고 위험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하여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풍수재 보험이란 보험의 대상인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폭풍·회오리 바람 등의 풍재나 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수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풍수재만 담보하는 단독의 보험은 없으며 현재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해당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 상품중 한아름 주택종합보험이나 주택상공종합보험 등 일부 상품에서는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482호”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인 경우 신체손해 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추가보험료의 부담없이 풍수재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표 1〉 화재보험에서의 풍수재 관련 담보 특별약관

국 문 약 관	영 문 약 관(F.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하는 손해 <p>태풍, 폭풍, 폭풍우, 회오리바람,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상기로 인한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p>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p>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손해, 원인의 직·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원인의 직·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땅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비, 바람,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에 들어있는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열음, 눈으로 생긴 손해. 풍재의 직·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ended Coverage Endorsement(E.C.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하는 손해 <p>태풍, 폭풍, 선풍, 우박, 폭발,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 민간소요, 항공기, 차량,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험자의 면책)</p>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p>서리 또는 한기후, 어름,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호파 또는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손해, 바람으로 인한 여부를 불문하고 비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우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지붕벽의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에 의하여 건물의 내부가 또는 건물내에 수용된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는 보상함.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하수관 또는 배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건물내 수용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위험담보 특별약관 <p>영문약관(E.C.E)과 조건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d, Inundation, Rain & Fresh water Damage Coverage Clouse. ○ 홍수, 범람, 우담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Earthquake, Water Damage, Storm, Tempest & Flood Extension Endorsement. ○ 지진(화재 및 진동), 탱크설비 또는 배관의 분수나 범람(그러나 설비손해는 제외), 폭풍, 폭풍우, 강우 또는 홍수, 행정당국 또는 공공 급수설비의 분수에 따른 도량이나 지하배관에서의 범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3. 약관해설

상기 기술한 국문 및 영문 풍수재 관련 특별약관 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국문은 태풍 및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과 같은 풍재 또는 수재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나, 영문(F.O.C)에서는 풍재와 수재위험을 별도 특별약관으로 제

정하였기에 보험가입시 보상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해당 목적물에 타당한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참조)

4. 풍수재특약보험료

풍수재특약보험료율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창고물건, 공장물건

등으로 물건별 또는 작업공정별 요율을 차등한 화재보험 요율과는 달리 모든 업종에 등지(지역) 및 건물 구조급별에 따라 동일하게 아래 요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풍수재 위험만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등기별 건물구조별 풍수재 특약요율 예시

등 지	1 등 지		2 등 지	
적 용 지 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북, 전북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남, 전남, 강원, 제주	
건 물 구 조	(1급) 1·2급 구조	(2급) 3·4급 구조	(1급) 1·2급 구조	(2급) 3·4급 구조
적 용 요 율	0.0412%	0.0495%	0.0467%	0.0585%
보 협 금 액	100,000,000원일 경우			
연간특약보험료	41,200	49,500	48,700	58,500

또한, 지역적 재해 위험요소를 감안, 풍재 및 수재를 분리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륙지방에 위치하며 지형이 고지대로서 과거 풍재피해는 있었으나 수재피해는 없었을 때는 이를 감안, 풍재특약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하천 및 호소지방에 위치하며 지형이 저지대로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은 수재피해에 대비 수재특약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어 저렴한 추가보험료 부담으로 풍재 및 수재위험으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적용보험료

풍재특약만 선택할 경우 : 연간 특약보험료의 20%

수재특약만 선택할 경우 : 연간 특약보험료의 80%

가. 주택물건의 보험료 산출 예

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표 3〉의 불입보험료는 전국 평균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 및 건물구조 급수에 따라 약간의 보험료가 증감될 수 있다.



나. 일반 및 공장물건의 보험료 산출 예

일반 및 공장물건은 직업 및 작업공정과 공장종별 요율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이 세분화 되어 있어 화재보험료는 생략하고 풍수재특약 보험료를 지역 및 건물 구조급수에 따라 상기 보험금액 5천만 원을 기준한 주택물건 특약보험료를 참작하여 화재보험 가입금액에 배수하여 산정한 특약보험료를 화재보험 가입시 추가 불입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할 때 풍수재특약 보험료는 4만1천2백원에서 5만8천5

백원의 저렴한 추가보험료 부담으로 풍수재위험으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표 2〉 참조)

6. 맷는 말

끝으로 여름철을 전후하여 발생하는 풍수재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보험으로서 재산관리를 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또한, 손해보상과 관련 일부보험 등으로 비례보상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 해당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건축물의 구조 및 등지에 따른 보험료의 예시(주택물건)

(단위 : 원)

화재보험료	구조급 등지	구조급				4급
		1급	2급	3급		
	1등지	8,500	13,500	22,000	335,000	
	2등지	10,500	16,500	26,500	41,000	
	3등지	12,000	19,500	31,500	48,500	
	4등지	14,000	22,500	36,500	56,000	
평균화재보험료		14,630			36,940	
풍수재특약보험료	건물구조급수 등지	1·2급			3·4급	
		특약	수재특약	풍재특약	수재특약	풍재특약
	1등지	16,480	4,120	20,600	19,800	4,950
	2등지	19,480	4,870	24,350	23,400	5,850
평균특약보험료		17,980	4,490	22,470	21,600	5,400
1년간 조건별 불입보험료	화재+수재		32,600		58,540	
	화재+풍재		19,120		42,340	
	화재+풍수재		37,100		63,940	

※ 1·2·3·4등지 및 1·2·3·4구조급은 화재보험요율서 참조.